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한 건설기능인력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민원처리 담당인력 2명(8급 2명)과 산재보험급여 재심사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교육부 5급)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인력 1명(보훈처 5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상향(5급 10명)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해 근로문화 개선지원과 7개소를 신설하며,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역산업안전감독과 3개소를 신설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

담센터에 민간위탁콜센터의 직접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총괄 등에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광역근로감독과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광역근로감독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두  
는 지방고용노동청은 제9항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14조제8항제1호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  
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위반사건의 처리
2.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질의 회신

3.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의 여성과 소년 및  
「최저임금법」 제2장의 최저임금에 관한 인허가 업무(제64조의 취  
직인허증은 제외한다)
4.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5.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을 말한다)
6. 사업장 정기감독(노무관리지도를 말한다) 계획 수립·시행
7.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8. 소속 지청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  
업장에 대한 조사·수사·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  
괄·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10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분장한다”를 “분  
장하되,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제9항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  
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제3호 중 “제9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항제2호”를 “제1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2항제1호”를 “제1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  
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

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3항(중전의 제12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을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⑭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역산업안전감독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광역산업안전감독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의 처리 관한 사항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 및 기관점검

에 관한 사항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내 둘 이상의 소속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과장”을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두는 지청은 제14조제9항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제14조제11항제2호”를 “제14조제1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9항제1호”를 “제14조제10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4조제11항제2호”를 “제14조제1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14조제12항제1호”를 각각 “제14조제13항제1호”로 한다.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 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⑦ 건설업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5 중 총계 “568”을 “570”으로, 일반직 계 “562”를 “564”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87”을 “589”로, 일반직 계 “581”을 “583”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6,512”를 “6,514”로, 일반직 계 “6,512”를 “6,514”로, 행정사무관 “192”를 “199”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9”를 “62”로, 행정주사 “1,033”을 “1,026”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01”을 “198”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0”을 “62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6,494”를 “6,496”으로, 일반직 계 “6,494”를 “6,496”으로, 행정사무관 “114”를 “121”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5”를 “208”로, 행정주사 “873”을 “866”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9”를 “196”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0”을 “622”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23”을 “25”로, 일반직 계 “23”을 “25”로, 행정주사 “6”을 “7”로, 행정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7 중 “26”을 “28”로, 일반직 계 “26”을 “28”로, 행정주사 “8”을 “9”로, 행정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55”를 “61”로, 일반직 계 “55”를 “61”로, 5급 이하 “54”를 “60”으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구분        | 과명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서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광역산업안전감독과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부산사하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광역산업안전감독과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동부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광주광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공주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 광역산업안전감독과 |

##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구분     | 과명                                                                     |
|--------|------------------------------------------------------------------------|
| 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 |

|        | 도과                                                                                               |
|--------|--------------------------------------------------------------------------------------------------|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부천시청   | 부천고용센터, 김포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구리고용센터, 남양주고용센터, 동두천고용센터, 양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파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하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광명고용센터, 의왕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

|        |                                                                       |
|--------|-----------------------------------------------------------------------|
| 평택지청   | 평택고용센터, 오산고용센터, 안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강원지청   | 춘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강릉지청   | 강릉고용센터, 속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원주지청   | 원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태백지청   |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
| 영월출장소  | 영월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울산지청   |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양산지청   | 김해고용센터, 양산고용센터, 밀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통영지청   | 통영고용센터, 거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달성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포항지청   | 포항고용센터, 경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구미지청   | 구미고용센터, 김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영주지청   | 영주고용센터, 문경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
| 안동지청   | 안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

|       |                                                                      |
|-------|----------------------------------------------------------------------|
| 전주지청  |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익산지청  | 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군산지청  | 군산고용센터, 부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목포지청  | 목포고용센터, 해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청주지청  | 청주고용센터, 옥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아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
| 충주지청  | 충주고용센터, 제천고용센터, 음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보령지청  | 보령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
| 서산출장소 | 서산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2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2. 제2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6월 29일까지)

|       |    |
|-------|----|
| 총계    | 20 |
| 일반직 계 | 20 |
| 행정사무관 | 2  |
| 행정주사  | 10 |
| 행정주사보 | 8  |

3. 제2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8월 8일까지)

|                |   |
|----------------|---|
| 총계             | 4 |
| 일반직 계          | 4 |
| 행정사무관          | 2 |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 1 |
| 전산주사           | 1 |

4. 제2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8월 8일까지)

|                                                   |     |
|---------------------------------------------------|-----|
| 총계                                                | 736 |
| 일반직 계                                             | 736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br>·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4   |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 56  |
|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 301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216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159

5. 제28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                                                   |   |
|---------------------------------------------------|---|
| 총계                                                | 1 |
| 일반직 계                                             | 1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br>·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6. 제28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                                                   |   |
|---------------------------------------------------|---|
| 총계                                                | 1 |
| 일반직 계                                             | 1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br>·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 ⑦ (생략)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하되, 근로문화개선지  
원과를 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제9항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  
다. -----

[illegible]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 22. (생략)

<신설>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2. ~ 22. (현행과 같음)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위반사건의 처리

2.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질의 회신

3.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의 여성과 소년 및 「최저임금법」 제2장의 최저임금에 관한 인

⑨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

허가 업무(제64조의 취직인허증은 제외한다)

4.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5.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을 말한다)

6. 사업장 정기감독(노무관리지도)을 말한다) 계획 수립·시행

7.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8. 소속 지청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수사·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  
----- 분장하되,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제9항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후단 삭제>

⑩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2. (생략)

3. 제9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1항제2호 및 제3호

5. 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⑪ (생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신 설>

구역을 포함한다) 내 특별감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568</u> | <u>570</u> | +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562</u> | <u>564</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br>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br>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43</u>  | <u>45</u>  | +2  |
| ·                                              | ·          | ·          |     |
| ·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587</u> | <u>589</u> | +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581</u> | <u>583</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br>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br>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43</u>  | <u>45</u>  | +2  |
| ·                                              | ·          | ·          |     |
| ·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6,512</u> | <u>6,514</u> | +2  |
| 일반직 계                                          | <u>6,512</u> | <u>6,514</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192</u>   | <u>199</u>   | +7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br>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br>관 또는 전산사무관 | <u>59</u>    | <u>62</u>    | +3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1,033</u> | <u>1,026</u> | -7  |
| ·                                              |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br>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br>주사            | <u>201</u>   | <u>198</u>   | -3  |
| ·                                              | ·            | ·            |     |
| ·                                              | ·            | ·            |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br>기                             | <u>620</u>   | <u>622</u>   | +2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6,494</u> | <u>6,496</u> | +2  |
| 일반직 계                                          | <u>6,494</u> | <u>6,496</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114</u>   | <u>121</u>   | +7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br>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br>관 또는 전산사무관 | <u>205</u>   | <u>208</u>   | +3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873</u>   | <u>866</u>   | -7  |
| .                                              |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br>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br>주사            | <u>199</u>   | <u>196</u>   | -3  |
| .                                              | .            | .            |     |
| .                                              | .            | .            |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br>기                             | <u>620</u>   | <u>622</u>   | +2  |

[별표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5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23</u> | <u>25</u> | +2  |
| 일반직 계 | <u>23</u> | <u>25</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6</u>  | <u>7</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u>6</u>  | <u>7</u>  | +1  |
| ·     | ·         | ·         |     |
| ·     | ·         | ·         |     |

[별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5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계    | <u>26</u> | <u>28</u> | +2  |
| 일반직 계 | <u>26</u> | <u>28</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8</u>  | <u>9</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u>8</u>  | <u>9</u>  | +1  |
| ·     | ·         | ·         |     |
| ·     | ·         | ·         |     |

[별표 17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전단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55</u> | <u>61</u> | +6  |
| 일반직 계 | <u>55</u> | <u>61</u> | +6  |
| ·     | ·         | ·         |     |
| 5급 이하 | <u>54</u> | <u>60</u> | +6  |